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91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이성운
문금주 · 이정문 · 임호선
안호영 · 문대림 · 양문석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제70조에 따라 맹견 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시·도지사에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를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기간 내에”를 “경우에는”으로,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맹견사육허가를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질평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철회하는”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으로 한다.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맹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1.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 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u>시·도지사에게</u>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 ----- <u>-사람(제70조에 따라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u>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u>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u>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u>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간 내에</u> 중성화 수술을 <u>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u> 한다.	3. ----- -. ----- <u>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u> ----- ----- <u>경우로서</u> ----- -- <u>경우에는</u> ----- <u>하</u> <u>지 아니하고 맹견사육허가를</u> <u>신청할 수 있다.</u>
<u><신 설></u>	4. <u>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생 략)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신 설>

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맹견사육허가를 할-----.

1.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

① <u>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u> 1. (생 략)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생 략) ② <u>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u>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u>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u>	<u>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u>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u> -----<u>취소 또는 철회하</u> <u>는</u>----- ----- ----- -----.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 ----- ----- -----
---	--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9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4.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 ~ 8. (생략) ⑤·⑥ (생략)	----- ----- . 다만,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맹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5. ~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